

20.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35호 1999. 2. 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1999. 1. 18 법률 제5628호) 및 동법시행령(1999. 2. 5. 대통령령 제16101호)의 개정으로 광역시의 일부동지역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한 업무의 주체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시·군”을 “시·군·자치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내무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

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